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7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이수진・임미애・이기헌

김동아 · 최기상 · 민병덕

이건태 • 유종오 • 정성호

장철민 · 추미애 · 김태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노인복지시설,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, 의료기관에 종 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 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.

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「의료법」 제3 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 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"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"을 "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 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종사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5조(신고의무) ① (생 략)	제15조(신고의무) ① (현행과 같			
	음)	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			
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				
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				
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				
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				
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	3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			
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	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			
의 의료기관의 장	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			
	<u> 종사자</u>			
4. ~ 16. (생 략)	4. ~ 16. (현행과 같음)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	